

2024년도 제3회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및 채용등록 일정 공고

2024년도 제3회 기간제근로자(사무보조원)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및
채용등록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
2024년 2월 29일

법무부 서울출입국·외국인청장

1. 대상자

최종 합격자

2403-0005 김○○

예비 합격자

2403-0001 김○○

2. 채용등록 안내

대상: 최종 합격자 1명

일시: '24. 3. 4.(월) ~ 3. 6.(수), 09:00 ~ 18:00 (중식 : 12:00 ~ 13:00)

장소: 서울출입국·외국인청 7층, 총무과

※ 주소: (08013)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1

추후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,

응시요건 부적합,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 등이 확인되는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□ 최종합격자 등록 시 구비 서류

- 기본증명서 1부
- 주민등록부등본 1부
- 가족관계증명서 1부
-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(가정법원 발행) 1부
- 채용신체검사서(공무원임용신체검사 지정 의료기관) 1부
 - ※ 검사비용은 기관에서 부담하므로, 영수증 등 수검 증빙서류 제출 요함
 - ※ **최근 3개월 이내 실시한 국가건강검진 검진서로 대체 가능**
- 반명함판(3cm×4cm) 사진 1매(최근 3개월 이내 촬영)
- 통장 사본 1부(본인 명의 통장에 한함)
-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 1부 **【별첨 1】**
- 공정채용확인서 1부 **【별첨 2】**

□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출입국·외국인청 총무과(02-2650-6221)로 연락 바랍니다. 끝.

【별첨 1】

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

본인은 법무부 서울출입국·외국인청 시행 2024년도 제3회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서약합니다.

<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>

1. 피 성년 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2024년 월 일

성명 : (서명)

법무부 서울출입국·외국인청장 귀하

